서울특별시 미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1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 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1. 10.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2. 1. 25.)

상정, 심사, 보류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2. 3. 1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보건행정과장

1) 제안이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통·폐합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위원회 통합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목적 추가 (안 제1조)
- 나. 위원회 통합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추가 (안 제2조)
- 다. 위원회 구성 추가 (안 제3조)
- 라. 위원회 통합에 따른 간사 변경 (안 제7조)

3. 검토의견(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조문 검토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에 따라 각각 운영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와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여 개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의 조례명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마포구건강 생활실천협의회'와「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 의위원회'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자칫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 조 례의 폐지로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치법규 제명 결정 원칙에 따라 제명은 규정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자치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이 잘 나타나게 해야 함. 이에 기존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주요내용을 대표하고 최근 건강생활실천을 강조하는 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표 1. 조례명칭 결정 현황〉

조례명	지방자치단체명	
	합 계	57 (100%)
<u>건강생활실천협의회</u>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기도, 강화군, 거창군, 계룡시, 고성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례군, 군포시, 김포시, 김해시, 남동구, 남해군, 대구광역시 동구, 밀양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영구, 연제구, 부천시, 사천시, 산청군, 성남시, 속초시, 수원시, 아산시, 안양시, 양산시, 양평군, 용인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구, 연수구, 정읍시, 진주시, 창년군, 창원시, 청주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해남군	47 (82.4%)
지역보건의료심의위 원회 및 건강생활실 천협의회	시흥시, 구리시, 안산시, 연천군, 완주군, 익산시, 진도군,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10 (17.5%)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 던 사항을 유사·중복 기능수행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 을 도모하고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 이는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라는 개정 목적과는 맞지 않은 조례 관리의 편리성에 치우친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로 다소 보일 수 있으나,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에 따라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위원이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법률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위원회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조문별 제목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분 명기하고 주요조문 검토 내용과 같이 조례제명의 결정 원칙에 따라 조례의 주요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명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7. 기 타 : 없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22-7 관련

발의년월일 : 2022. 3. .

발 의 자: 권영숙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자치법규 제명 결정 원칙에 따라 조례 주요 내용을 대표하고, 조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을 수정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	<현행과 같음>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		마포구 건강생활실
료심의위원회 구성		천협의회 및 지역보
및 운영 등에 관한		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